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RFID 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한 RFID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RFID 시스템"이라 함은 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식별 정보 및 주변 환경 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저장·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3. "RFID 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라 함은 사물 등에 내장 또는 부착되어 당해 사물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기타 정보를 기록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이들 정보에 대한 판독 또는 저장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4. "RFID 취급사업자"라 함은 RFID 칩이나 태그를 제조·판매하거나, RFID 태그가 부착 또는 내장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판매하는 자, RFID 태그에 기록된 물품정보 등을 개인정보와 연계하는자,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하거나 RFID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 5. "이용자"라 함은 RFID 태그가 내장 또는 부착된 물품을 구매하거나 RFID 태그가 내장 또는 부착된 물품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RFID를 통하여 수집한 물품정보와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등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없이 물품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기록 · 수집 및 연계

- 제4조(개인정보 기록의 금지 등) ①RFID 취급사업자는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정한 경우 또는 서면 등을 통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RFID 취급사업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미리 개인정보의 기록목적 및 이용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5조(RFID 태그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RFID 취급사업자는 제4조 제1항 규정의 RFID 태그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RFID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의 연계) RFID 취급사업자는 RFID 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 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제3장 RFID 태그 부착 사실의 표시

- 제7조(RFID 태그 부착 사실 등의 표시 등) ①RFID 취급사업자는 이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이후에도 당해 물품에 RFID 태그가 내장 또는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이용자에게 설명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1.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착 위치
 - 2. RFID 태그의 성질 및 기능
 - 3. RFID 태그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
 - ②RFID 취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 또는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RFID 태그의 기능제거 방법 등에 대한 표시 등) ①RFID 취급사업자는 이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이후에도 당해 물품에 RFID 태그가 내장 또는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스스로 RFID 태그의 기능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하거나 해당 물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RFID 취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 또는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RFID 취급사업자는 RFID 태그가 내장 또는 부착된 물품 등을 구입한 이용자가 용이하게 RFID 태그의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RFID 취급사업자는 이용자가 RFID 태그를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RFID 취급사업자는 제1항 규정의 RFID 태그의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이용자에게 설명하거나 해당 물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 제9조(RFID 태그의 인체이식 등 금지) ①누구든지 RFID 태그를 인체에 이식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신체에 RFID 태그를 지속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FID 태그를 이용자가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품 등에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RFID 리더기 설치의 표시) 누구든지 RFID 태그가 부착 또는 내장되어 이용자에게 교부된 물품에 대한 정보 또는 RFID 태그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리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유통·내부 보안유지·재고 관리를 목적으로 리더기를 설치하거나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지 않아 설치장소를 용이하게 표시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RFID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RFID 취급사업자는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기록·수집하거나, RFID 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당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5-18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RFID 시스템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RFID 취급 사업자는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기록·수집하거나, RFID 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RFID 시스템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 등을 당해 RFID 시스템 도입시에 분석·평가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RFID 취급사업자는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기록·수집하거나, RFID 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RFID 태그와 관련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4조(RFID 태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제고) RFID 취급사업자 또는 RFID와 관련이 있는 사업자단체·기관은 이용자에게 RFID 태그의 유용성 및 장·단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개인정보 이용·제공·파기 등) 이 가이드라인에 정한 사항 외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파기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등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른다.

제16조(가이드라인의 개정에 관한 사항) 이 가이드라인은 RFID 관련 기술의 발전 및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 RFID 취급사업자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